

#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2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7. 8. 31.

발 의 자 : 김인식의원의외 7인

## 1. 제안이유

스포츠 여가활동이 대중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한 체력단련을 도모하는 한편, 나아가 여성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의 수영장 시설 이용 여성에 대하여 생리기간만큼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의 감면 조항에 여성 수영회원 중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(안 제8조제1항제9호).

나. 생리를 하는 여성에 대하여 월 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하도록 규정함(안 제8조제2항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

(2) 찬성의원 서명

##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여성 수영회원 중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, 제4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, 제9호의 사용료는 월 회원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사용료의 감면) ① (생략)</p> <p>1.~8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10. (생략)</p> <p>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, <u>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u></p>	<p>제8조(사용료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여성 수영회원 중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입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</u></p> <p>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, <u>제4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, 제9호의 사용료는 월 회원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한다.</u></p>



#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9. 7  
교육사회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7. 8. 31 김인식의원외 7인
- 나. 회 부 일 자 : 2007. 8. 31.
- 다. 상 정 일 자 :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 
제2차 교육사회위원회(2007. 9. 7)  
상정, 질의, 심사, 원안가결  
제2차 본회의(2007. 9. 19)  
상정, 표결, 심사, 수정가결

## II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김인식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청소년의 체력증진과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의 수영장 시설 이용 여성에 대하여 생리기간 만큼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용료의 감면 조항에 여성 수영 회원 중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을 포함함(안 제8조 제1항 제9호).
- 나.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하는 여성에 대한 사용료를 월 회원에 한해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하도록 규정함(안 제8조 제2항).

### III. 검토의견 (전문위원 : 안문환)

본 제정 조례안은 스포츠 여가활동이 대중화 되어가는 시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한 체력단련을 도모하는 한편, 여성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 소유 수영장 시설이용 여성에 대하여 생리기간만큼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,

#### 주요 내용은

- 제8조 제1항 제9호에 여성 수영회원 중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을 포함 시키고,
- 제8조 제2항에 사용료는 월회원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토록 규정하였음.

####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건강과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생리 중인 여성을 배려하는 사회적 문화는 아직 성숙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생리중인 여성들의 건강권 보호 및 복지증진 차원에서 수영장 이용 여성 월회원에 대하여 생리 할 인제를 도입하여 수영장 이용료를 경감하는 사항은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조례라고 사료됨.

다만, 본 조례안의 시행 시 수입 감소분에 대한 증대방안과 이용료 감면 시 신분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이 미 발급된 만17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본인여부 확인, 50세 이상의 여성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의 유효기간 설정 등 운영관련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### IV. 질 의 요 지 : 생 략

V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

V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 
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2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7. 9. 18

발 의 자 : 광영교 의원외 5인

1. 수정이유

수영장 시설 이용 여성 월회원의 수영장 이용 편의성 증진과 복지를 제고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 사 용료를 감면함(안 제8조제1항제9호).

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 
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

# 수 정 안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8조(사용료의 감면)①(생략)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10. (생략)</p> <p>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,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p>	<p>제8조(사용료의 감면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여성 수영회원 중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입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</u></p> <p>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, <u>제4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, 제9호의 사용료는 월 회원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한다.</u></p>	<p>제8조(사용료의 감면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</u></p> <p>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, 제4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, 제9호의 사용료는 월 회원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한다.</p>

